\* 편의상 회사명은 라이프디자인, 자본금은 1억원으로 정함

**유한회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 회사는 '유한회사 라이프디자인'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Life Design LLC'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라이프스타일 컨설팅 서비스업
2. 개인 및 기업 대상 라이프 디자인 서비스업
3. 라이프스타일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4. 라이프스타일 관련 제품 기획, 제조 및 판매업
5.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업
6. 온라인 플랫폼 개발 및 운영업
7. 전자상거래업
8. 부동산 임대업
9.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3조 (본점 소재지)**

1.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2.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ifedesign.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자본금 및 출자**

**제5조 (자본금)**

본 회사의 자본금의 총액은 금 일억원(₩100,000,000)으로 한다.

**제6조 (출자좌수)**

1. 본 회사의 출자 1좌의 금액은 금 천원(₩5,000)으로 한다.
2. 본 회사의 총 출자좌수는 이만(20,000)좌로 한다.

**제7조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본 회사 설립 시 사원의 성명, 주소 및 각 사원이 인수한 출자좌수는 다음과 같다.

1. 성명: [사원1 성명] 주소: [사원1 주소] 출자좌수: 12,000좌 (60,000,000원)
2. 성명: [사원2 성명] 주소: [사원2 주소] 출자좌수: 8,000좌 (40,000,000원)

**제8조 (출자의 납입)**

각 사원은 인수한 출자좌수에 따른 금액의 전액을 회사 설립 등기 전에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사원의 책임)**

사원의 책임은 본 정관에 따라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0조 (사원의 퇴사)**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퇴사한다.

1. 사망

2. 성년후견개시

3. 파산

4. 제명

5. 지분의 전부양도

6. 기타 법률에 정한 사유의 발생

**제11조 (사원의 제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원을 사원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한 때

3. 기타 회사의 존속 또는 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 (지분의 양도)**

1. 사원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제1항의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 출자좌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한다.
3. 지분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출자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대항하지 못한다.

**제13조 (지분의 상속)**

1. 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지분을 상속한다.
2.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사원으로 할 것을 결정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회사에 대하여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3장 사원총회**

**제14조 (사원총회의 권한)**

1. 사원총회는 상법 및 본 정관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2. 사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가. 정관의 변경

나. 회사의 해산, 합병 또는 조직변경

다. 자본금의 감소

라. 이사의 선임 및 해임

마. 감사의 선임 및 해임

바. 재무제표의 승인

사. 이익배당의 결정

아. 기타 상법 또는 본 정관에 정한 사항

**제15조 (사원총회의 소집)**

1.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3.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다른 이사가 소집한다.
4. 총 출자좌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소집통지)**

사원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결의방법)**

1.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사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의는 총 사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총 출자좌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한다.

가. 정관의 변경

나. 회사의 해산, 합병 또는 조직변경

다. 자본금의 감소

라. 사원의 제명

**제18조 (의결권)**

1.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2. 사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사록)**

1. 사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20조 (이사의 수와 선임)**

1. 본 회사의 이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2.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사원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1조 (대표이사)**

1. 회사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2. 대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대표이사가 된다.
3.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2조 (감사)**

1. 본 회사는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2. 감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3.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사원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4.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장 회계**

**제23조 (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 (재무제표의 작성 및 비치)**

1.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 제1항의 서류를 사원총회에 제출하기 위하여는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 (이익배당)**

1. 회사는 매 결산기의 이익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가.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나. 기타의 법정적립금

다. 배당금

라. 임의적립금

마.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1. 이익배당은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이익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사원명부에 기재된 사원에게 지급한다.
3. 이익의 배당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사원총회의 결의로 다른 방법에 의한 분배를 정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및 청산**

**제26조 (해산사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사원이 1인으로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새로운 사원을 추가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청산인)**

본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원총회에서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7장 보칙**

**제28조 (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칙 등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27조 (법령의 적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 및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회사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 사업연도)**

본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 설립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발기인)**

본 회사 설립 발기인의 성명, 주소는 다음과 같다.

1. 성명: [사원1 성명] 주소: [사원1 주소]
2. 성명: [사원2 성명] 주소: [사원2 주소]

위와 같이 유한회사 라이프디자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20\_\_년 \_\_월 \_\_일

발기인 [사원1 성명] (인) 발기인 [사원2 성명] (인)